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Q&A

01 디퓨저의 베이스용액은 동일하고 아로마 오일의 향이 다른 경우, 모든 향에 대하여 검사 및 신고해야 하나요?

A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완제품 모두 적합 확인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고 대표제품과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을 경우 파생신고로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은 갈음 가능합니다.



02 캔들을 제조하기 위한 재료의 종류, 용량, 색상도 신고 시와 동일하고 캔들을 굳히는 틀만 변경되었습니다. 향초의 외형(모양)만 달라진 것인 데 다시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A

제품명, 성분 및 배합비가 동일하다면 신고 시 한 종류를 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단, 제품명이 변경될 경우 파생제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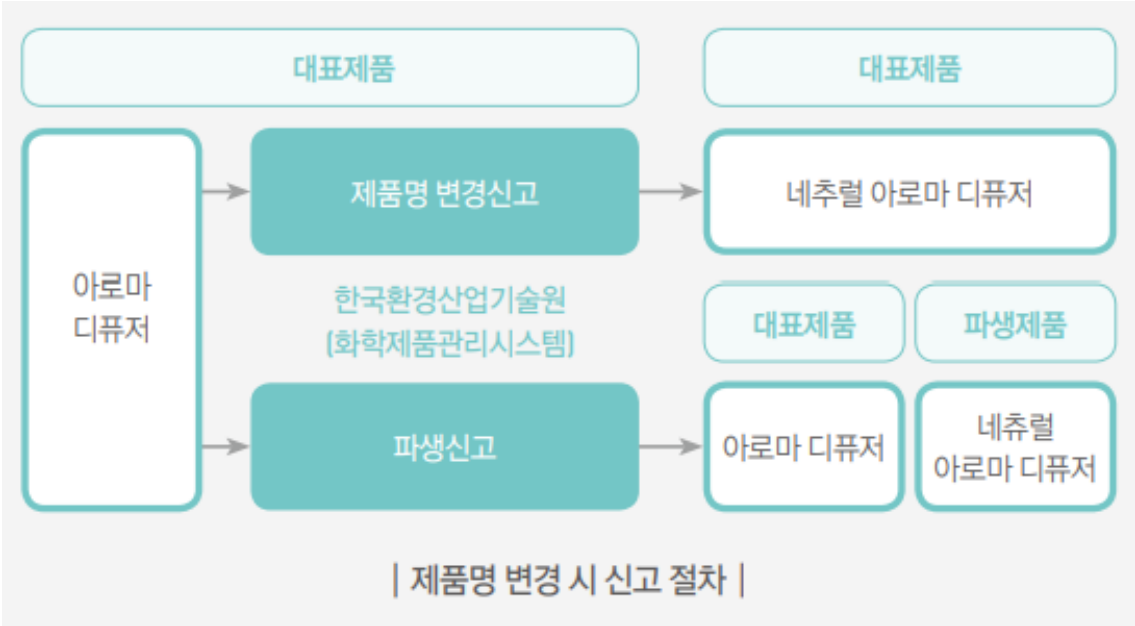
Q&A

03

제품명은 신고 후 변경가능한가요? '아로마 디퓨저' 라는 제품명으로 방향제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같은 제품을 '네추럴 아로마 디퓨저' 로 제품명만 바꿔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A

네. 제품명은 변경신고를 통해 변경하시거나, 두 가지 제품명을 모두 사용하려면 파생제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04

판매페이지에는 신고된 제품명과 동일하게 기재 후 판매해야 하나요?

A

네. 판매페이지는 신고된 제품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Q&A

05

신고를 완료한 디퓨저의 포장용기를 변경하였습니다.
포장용기 외에는 모두 신고 시의 내용과 동일한데도
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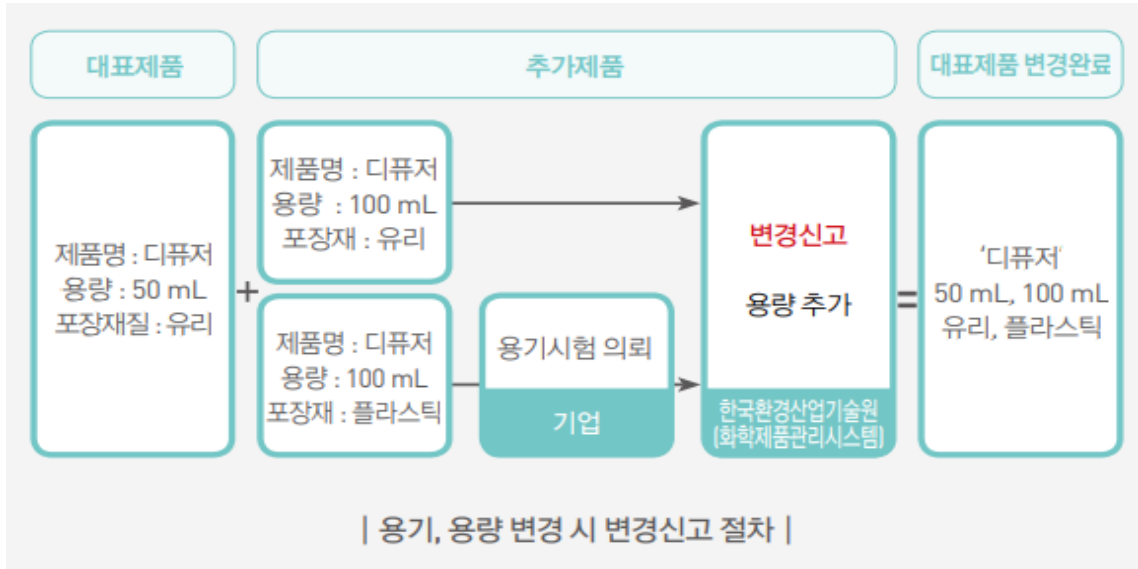
용기의 재질, 형태 등이 바뀌면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재확인 및 신고를 해야합니다.

0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신고까지 완료하였는 데,
용량만 다르게 바뀌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현재 신고 시 용량 및 중량 등을 범위로 받고 있습니다.
변경신고하시면 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Q&A

07

이미 신고완료한 두 종류의 디퓨저를 단순 합치기만 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시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A

네. 단순 소분 및 첨가 모두 제조 행위에 해당되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08

석고 방향제와 달리 향 오일 등을 첨가하지 않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석고 장식물을 판매할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방향제, 탈취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09

판매페이지에 이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와 표시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였는데,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제품에도 그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사로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제품에는 기존의 정보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에 관한 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대로 판매하여도 되나요?

A

주소 변경 시 변경신고와 함께 제품 표시도 변경해야 합니다. 기존에 이미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라벨, 스티커 등의 변경이 필수는 아니나, 소비자에게 바뀐 정보 제공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천연 계피 스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발향제품을 첨가하지 않고 단순 건조한 시나몬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모기가 계피향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니 '천연모기기피제'라고 표시를 해도 되나요? 또한 계피 자체에서 나는 향의 광고를 위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하지 않고 '방향제' 등의 표시를 해도 되나요?

A

보건용 기피제 및 살충제*를 제조·수입할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기, 파리, 개미, 바퀴벌레, 진드기, 빈대, 벼룩 등

쌀벌레, 좀벌레, 날벌레(깎따구, 하루살이) 등은 보건용 기피제가 아닌 기피제로서 확인 및 신고 후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위생해충을 억제, 퇴치하는 경우에는 기피제로 분류되고, 해충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살충제로 분류가 됩니다.

천연물의 경우라도 해당 효과를 홍보하려 한다면 승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제의 경우, 고시 적용범위의 제외항목(3) 제레용 및 말린 꽃잎 등 인위적으로 향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에 해당한다면 확인·신고하지 않고 판매가 가능합니다.